



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(TEFAP) 수혜 자격 증명

수혜자 이름:			
우편번호:		총 가구원:	

1단계: 아래 두 확인란 중 하나에 체크하여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(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, TEFAP) 자격이 있음을 표시하십시오.

범주형: 귀하의 가구가 다음 프로그램 중 하나에 참여하는 경우 분명 TEFAP를 통해 미국 농무부(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, USDA) 식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. 예: **SNAP, WIC, TANF, Medicaid** 또는 **SSI**.

- 또는 -

가구 소득: 귀하의 연간 총 가구 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른 연방 빈곤 수준의 225% 이하인 경우, TEFAP를 통해 USDA 식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(부록 A 참조).

2단계: 증명하려면 아래 확인란에 체크한 후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.

여기에 체크함으로써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.

- 위에 기재된 수혜자의 이름, 우편번호 및 가구 규모가 정확합니다.
- 수혜자는 뉴욕주에 거주합니다(최소 거주 기간 요건 없음).
- 수혜자는 1단계의 TEFAP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.
- 이 식품은 수혜자의 가정 내 소비용으로만 사용되며, 판매, 교환 또는 물물교환되지 않습니다.
- 수혜자는 아래 USDA 비차별 성명서에 설명된 대로 자신의 민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.

서명(선택사항)

날짜(필수사항)

이 양식은 식품을 수령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.

USDA 비차별 성명서

모든 다른 FNS 영양 지원 프로그램, 주 및 지역 기관 그리고 그 하부수령자는 다음과 같은 차별금지 성명서를 붙여야 합니다.

연방 시민권법과 미국농무부(USDA) 시민권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은 인종, 피부색깔, 원국적, 성(젠더 정체성과 성적 취향을 포함해), 장애, 나이 혹은 이전 시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이나 앙갚음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못합니다.

프로그램 정보를 영어 외 다른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. 프로그램 정보를 접하기 위해 대체 의사소통 수단(예: 브라우 점자, 큰 활자, 음성 테이프, 미국 수화)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혹은 지방 책임 기관이나 USDA TARGET 센터에 (202)720-2600(음성 및 TTY)으로 전화를 하거나 연방 릴레이 서비스(800-877-8339)를 통해 USDA에 연락하십시오.

프로그램 차별 민원을 접수하려면 민원제기자가 USDA 프로그램 차별 민원 양식인 AD3027을 작성해야 하는데, 이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: <https://www.usda.gov/sites/default/files/resource-files/ad3027.pdf>. 아니면 아무 USDA 사무실에서나 아니면 (866)-632-9992로 전화를 하거나 혹은 USDA에 편지를 보내서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. 편지에는 민원제기자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와 함께 주장하는 차별 행위를 상세하게 적어 시민권 차관보(ASCR)에게 주장하는 시민권 위반의 성격과 날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. 작성한 [AD-3027](#) 양식이나 편지를 다음과 같이 USDA 로 보내주십시오.

- 우편:**
U.S. Department of Agriculture
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
1400 Independence Avenue, SW Washington,
D.C. 20250-9410 아니면
- 팩스:**
(833) 256-1665 아니면 (202) 690-7442 아니면
- 이메일:**
program.intake@usda.gov

본 기관은 기회 균등 서비스 기관입니다.